

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19. 6. 28.>
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(제38조 관련)

항 목	허 가 기 준
사 무 실	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